

화장품업종 기업을 위한 K-Beauty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 가이드



1 화장품업종 상표 분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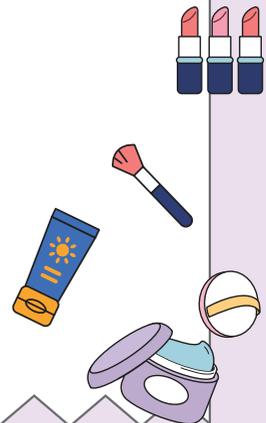
가. 관련기사	1
나. 분쟁 통계	3
다. 화장품업종 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기초	5

2 K-브랜드 침해 대응 매뉴얼

가.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 및 사례	6
나. 무단선점 상표 대응 전략 및 사례	10

3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주요 상표 보호 지원사업 안내	15
나. 지식재산권 정보 사이트	17
다. 해외 상표 검색 사이트	17
라. 업무협약 체결 협회 사이트	18
마. 기타 지식재산 보호 관련 기관	18



1

화장품업종 상표 분쟁 현황

가. 관련 기사

(1) 태국 진출 K뷰티 철저한 브랜드 관리 필요... 위조품 피해 사례 증가 (팜뉴스, 2022.11.17.)



태국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철저한 브랜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K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 사례가 증가하여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 이미지에 역시 손상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KOTRA 태국 방콕 무역관에 따르면 태국정부가 지식 재산권 침해 방지를 강화해 나가는 만큼 태국 화장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유사 위조상품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표 및 디자인, 특허에서 지식 재산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태국 시장 내 위조상품이 유통될 경우 정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아거스* 임동숙 대표는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수출이 증가하는 만큼 위조품 유통에 대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제품 출시 전 중국 뿐 아니라 아세안 시장에도 상표 등록을 꼭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조품을 제조, 유통함에 따라 상표권 이외에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다양한 IP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리팡 아거스: 해외 유통 위조상품 대응 솔루션 제공 기관

* 출처 | 팜뉴스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99>)



(2) 'K뷰티' 열풍 틈타...해외에서 '짝퉁' 한국 화장품 판친다 (경향신문, 2022.10.20.)



한류 열풍 속에 'K뷰티'가 뜨면서 해외에서 가짜 한국 화장품 제품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류 열풍 속에 한국 화장품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사례가 2019년 206건에서 2020년 754건, 2021년 952건 등 2년 사이 4.6배 늘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 기업 등이 우리나라 화장품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해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국 화장품의 위조상품 유통도 함께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한국 화장품의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중략)

특허청은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내놨으며,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한국 화장품의 소비가 많은 나라의 온라인 판매망 등을 중심으로 상표 무단 선점과 위조상품 유통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하 생략)

* 출처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202137025>)



(3) 해외 상표등록 출원 '화장품' 피해 가장 많아... 대응방법은? (CNC뉴스, 2024.01.15.)



최근 4년간('19~'22) 중국과 동남아(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외국기업이 K-브랜드 상표를 무단 출원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특허청이 밝혔다. 품목별로 화장품(18.7%) 피해가 가장 많았고 전자기기(15.3%) 의류(15.1%) 순이었다. K-콘텐츠 확산에 따라 우리 기업 브랜드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상표 무단선점이 성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에선 상표브로커에 의해 우리 기업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김광춘이 유명하다. 그는 2013년부터 우리 기업 상표를 무단 선점해, 중국 진출 시 고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수억원을 가로챘다. 우리 기업으로선 자신의 상표를 돈으로 주고 사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중략)

특히 우리 기업의 상표등록 허점을 노리는 교묘한 수법도 동원한다. 보통 기업들은 자신의 비즈니스 관련 업종만 상표 등록을 하는데 화장품은 3류(화장품류) 의류는 25류(의류) 등이다. 그런데 중국 상표브로커는 우리 기업의 정보를 포착해, 등록해 놓지 않은 14류(액세서리류) 등 연관성 있는 업종을 선점해 피해를 입힌다. (중략)

이러한 중국 상표브로커들은 인지도가 있는 상표들을 중국에 미리 등록하고 해당 상표를 보유한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양도 또는 소송을 걸어 합의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으로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특허청의 조언이다. (이하 생략)

* 출처 | CNC 뉴스

(<http://www.cncnews.co.kr/mobile/article.html?no=8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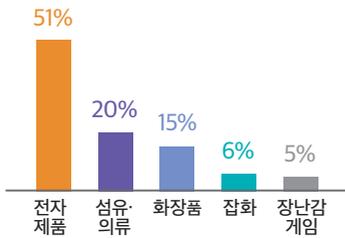
나. 분쟁 통계

(1)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유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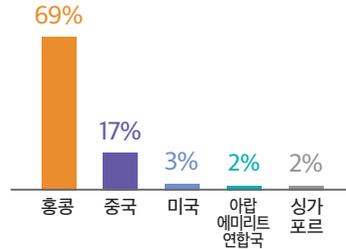


-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는 97억 달러(11.1조원, 2021년)이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
-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 섬유·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등 순으로 나타남
- 위조상품이 유통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미국(3%), 아랍에미리트연합국(2%), 싱가포르(2%) 순으로 뒤따름

< 피해품목 >



< 유통 국가 >



-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부정적임



* 출처 |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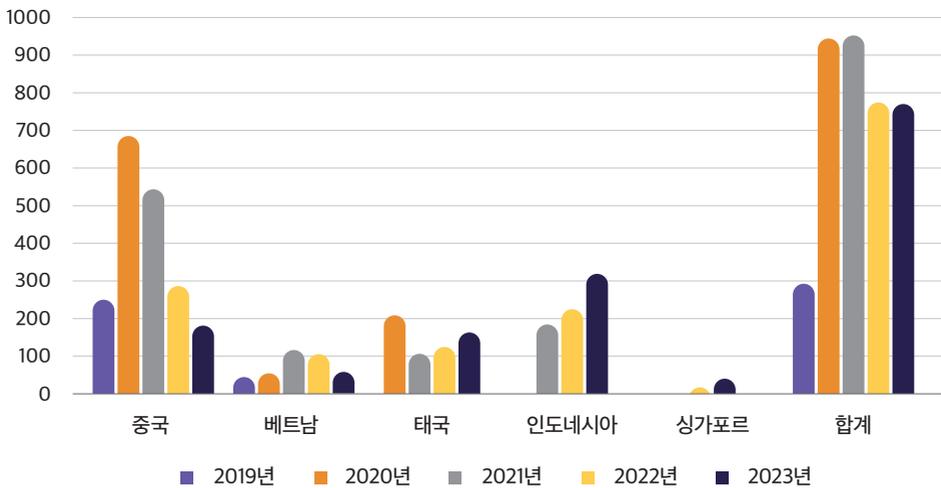


(2) 최근 5년간 화장품업종(3류, 21류) 무단선점 의심 상표 통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최근 5년간 중국 및 동남아권 국가를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산업 기업의 상표 무단선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무단선점 상표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이슈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해외 무단선점 의심 상표 정보조사 사업: K-브랜드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국가의 출원 상표를 전수 조사하고, 발견한 피침해 사실을 기업에게 신속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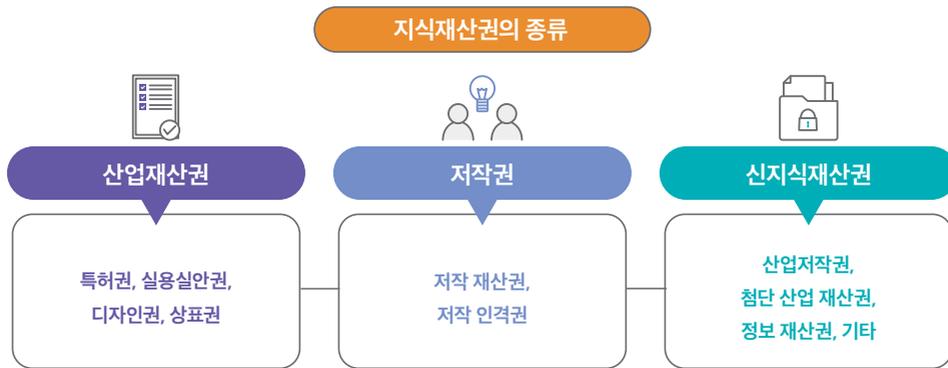
국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국	250	680	543	290	186
베트남	48	56	117	106	64
태국		211	107	129	163
인도네시아			185	226	319
싱가포르				20	40
합계	298	947	952	771	772

다. 화장품업종 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기초



(1) 지식재산권이란

- 문화,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식 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 총칭



(2) 상표란

- 상표란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

(3) 상표권 등록요건

-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아닌 것
- 보통명칭, 성질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아닌 것
- 기타 부등록 사유(품질 오인, 수요자 기만, 부정한 목적,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상표권 출원시 유의할 사항

- 실사용 상표와 대응되는 상표의 출원
- 적절한 상품분류 및 지정상품 선택
- 해외출원 여부 및 해외출원 방식(개별국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검토

(5) 상표권 등록 후 유의할 사항

-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10년
-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필요
- 등록상표와 동일상표 사용으로, 불사용취소에 대비

(6) 상표권 침해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K-브랜드 침해 대응 매뉴얼

가.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 및 사례

(1) 위조상품이란?

우리 기업의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한 짝퉁, 위조품, 모방품, 가품 등을 의미함

한국기업 제품	중국 모방제품
	

* 출처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fashion-beauty/2022/12/18/DGHRORDXHVAEFLPJRTPE4ZEJ4/>)



(2) 위조상품 발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수출 예정 국가에서도 유통 중에 있으며, 이를 발견·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오프라인	온라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이 자사의 유통경로, 시장, 전시회 등 조사 2. 거래관계가 있는 대리점, 라이선시, 판매업자로부터 정보 입수 3. 위조상품 조사 전문업체나 로펌 등에 의뢰하여 침해조사 실시 4. 세관, 시장감독기관이 침해의심 물품을 발견하여 통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이 직접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 2. 위조상품 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3.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위조상품 정보를 수령

(3) 위조상품 유통 대응

준비단계	지식재산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의 사전 확보가 중요 ·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마다 별도 권리 확보 필요 ·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준비
대응단계	증거수집 및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조상품 판매자 확인 및 필요한 정보 수집 · 위조상품 현물, 판매점 사진, 판매사이트 화면 캡처, 영수증 등 증거 확보 · 중국의 경우 수집 증거에 대한 공증(인터넷 화면 공증, 구매공증 등) 필요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 권리 현황, 사용 여부, 자사 권리 확인, 공격 가능성 및 역공격 가능성 검토 · 국가별 제도 확인 후 대응전략 수립 · 대체로 경고장 발송, 행정단속, 민사·형사 소송 등의 조치 가능

(4)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의 위조상품 대응

-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게시물 삭제 요청(notice and takedown)'은 소송 등 타 대응조치 대비 간단하고 신속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발견한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나 경험이 많은 전문업체를 통해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을 추천

< 온라인플랫폼별 위조상품 대응 방법 >

○ 알리바바 계열 쇼핑몰

-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로 타오바오, 티몰, 티몰글로벌, 알리바바, 1688, 알리익스프레스가 있음
- IP Protection Platform(IPP)이라는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표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인정되면 침해의심자(피신청인)에게 포인트 공제, 링크 삭제, 온라인숍 폐점 등의 강제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쇼피

-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들과 대만, 브라질 등 12개국에 진출한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 홈페이지 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사이트를 찾기가 어려우며, 구글에서 "shopee ip infringement"로 검색하여 사이트를 찾는 편이 용이함
- 상표권 침해 신고의 경우에는 위임장(상표권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해당 국가에서의 상표등록증,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진 자료와 현지 통화 기준 가격정보 (Shopee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해야 함



○ 아마존닷컴

- 미국, 유럽 등에서 1위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아마존 브랜드 등록 (Amazon Brand Registry)이라는 정책을 시행
- 이 정책에 따라 상표권자가 아마존닷컴에 상표권을 등록해 놓으면, 다른 판매자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을 게재할 경우에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걸러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존닷컴에 신고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내에서 지식재산신고센터를 운영
- 동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서를 권리입증서류(상표권, 저작권), 위임장 등과 함께 제출하여 신고하거나 개별상품 판매페이지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음



화장품업종 기업의 위조상품 유통 대응 사례



▶ 해외 온라인 판매 사이트 및 SNS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대응

1) 현황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러시아 등 29개국에 진출한 국내 화장품 기업 A사는 태국 등에서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해 디자인 침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참여

2) 경고장 발송 대응

해당 위조상품에 대해 해외대리인 의견 등을 확인하여 저작권, 민사소송, 경고장 송부 등의 대응 수단 검토

경고장 발송

경고장 발송을 완료하였고, 경고장 등 기타대응으로 동일 침해자의 위조상품 판매 중지 및 광고 중단을 확약



▶ 민사소송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대응

1) 현황

지원기업 B사는 스킨케어 화장품 브랜드로 활발한 해외사업을 진행하던 중, 중국 제조업체에 의한 위조상품 제조·유통 피해가 심각해짐을 확인함. 위조상품에 대한 최초 인식 당시에는 1~2가지에 불과하였으나 위조상품의 범위가 지원기업이 제조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이르게 되었고, 유통지역이 중국 뿐 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동 지역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분쟁 대응 전략 사업사업에 참여

2) 민사소송 대응

민사소송 대응

위조상품 구매감정 및 공증진행을 통해 위조상품의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가능성을 검토하고, 선주문 후공급으로 이루어지는 판매방식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결과 승소



▶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대응

1) 현황

최근 5년간 10개 국가에 여성용 향수를 판매·수출하는 국내기업 C사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정품을 보증한 정품인증라벨까지도 위조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신청

2) 온라인 차단지원 대응

베트남의 경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통해 2023년 1,700여건의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시켰고, 2024년에도 2,000여건의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함. 상표의 서체 및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 저작권 등록 및 이에 대한 침해 신고를 진행하여 가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고, 또한 리셀러들의 가격 덤핑 사례가 많아 인증 셀러 여부 확인 후 비정상적인 유통 제품 차단을 통해 제품 가격 정책 유지 및 유통 상황 관리까지 진행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 등 세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중인 우리기업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여 유통차단 및 기업 맞춤형 대응방안 제시

3) 오프라인 침해소송 제기 대응

침해업체에 대한 온라인 조사, 현장조사, 위조상품 구매 및 공증을 근거로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액 판결 받음

●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효과

판매 게시물 차단, 행정단속, 경고장 발송 등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우리기업의 강경한 대응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조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정적 가격형성 및 품질 오인을 방지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협업체)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

나. 무단선점 상표 대응 전략 및 사례



(1) 무단선점 상표란?

- 국내기업이 먼저 출원·등록했거나 먼저 사용한 상표를 해외에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

상표 무단선점 유형

- ① 상표 출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가로채 먼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 상표 브로커가 부정한 목적으로 가로채기 출원을 하는 경우 및 수입업자 등 관계자가 출원하는 경우도 있음
- ② 어떤 상품에 상표등록을 했는데 타인이 다른 상품에 상표를 출원한 경우
-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의류(25류)에 상표출원을 했는데 제3자가 신발(25류), 가방, 핸드백(18류), 선글라스(9류) 등 다른 패션 관련 상품에 상표를 출원하여 권리를 선점하는 경우
- ③ 어떤 상품에 상표등록을 했는데 타인이 그 상품과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상표를 출원한 경우
-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화장품(3류)과 화장품판매업/광고업(35류)의 유사성이 인정되어 서로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나눠가질 수 없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화장품(3류)에 상표등록을 받았더라도 제3자가 화장품 관련 광고업(35류)에 등록을 받아 화장품의 판매나 광고를 방해할 수 있음

상표 무단선점 이유

- ① 상표권을 고가에 양도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상표 브로커)
- ②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방해하려는 경우(경쟁사)
- ③ 국내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또는 라이선스를 받으려는 자 등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한 경우
- ④ 한류 현상에 편승하려고 상표 또는 상품의 형태나 포장 디자인을 모방하는 경우
- ⑤ 당초에는 선의로 출원·등록을 했지만 계약 종료 등 사정변경이 있는데도 상표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합작법인, 수입업자)

(2) 무단선점 상표 발견

- 상표의 무단 선점에 대한 대응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
- ① 기업이 중국, 아세안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② 국내 또는 해외 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 ③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ip-navi.or.kr/kbrands)'에서 '선점의심 정보조회' 활용

(3) 무단선점 상표 대응

- 무단선점 상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자사 상표권 확보 여부, 해당 국가 진출 시기, 상표 무단선점자 및 목적 등을 미리 파악하고 검토해 보아야 함



(4) 무단선점 상표 대응 조치 방안

- 우선권주장 상표출원
 - 조약상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면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부터 보호해 주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
 - 우리나라에서의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단선점 상표를 발견했다면 신속하게 해당 국가에 상표출원을 하고 조약우선권을 주장함으로써 간단하게 문제 해결 가능
- 정보제공
 - 우리나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심사관에게 ‘무단선점 상표이므로 상표등록을 거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 제출 가능
- 이의신청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심사관이 상표출원을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출원의 내용을 공고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함(간혹 상표등록 후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음)
 - 이의신청 기간은 대개 1~3개월로 짧은 편이므로 무단선점 상표를 발견하면 그 상표가 언제 출원공고 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함

< 주요 국가별 대응 방안 추진 가능 여부 >

구분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미국	유럽연합
정보제공	○	X	X	X	X	X	○	X
이의신청	○	○	○	○	○	○	○	○



○ 무효심판

- 상표등록 후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해 달라는 심판 청구가 가능
- 등록무효는 상표등록의 효력을 소급해서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임
- 국가마다 무효사유, 청구인 자격, 청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
 - * 특히 5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유의해야 함

○ 취소심판

- 등록취소는 상표권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등록무효와 달리 소급적인 효력은 없음
- 대표적인 등록취소 사유는 상표등록 후 3년 내지 5년 이상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임
- 무단선점 상표는 상표를 사용하기보다는 매각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함

○ 협상

-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사건에서는 다수의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해외에서의 분쟁은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쉽지 않고 2~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상표 무단선점자를 대상으로 상표권의 이전 또는 포기 등에 대해 교섭하는 것도 고려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는 고액의 대가나 무상의 사용허락 등을 요구받을 수 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어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대리인을 통해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을 청구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며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

< 주요 국가별 대응 방안 추진 가능 여부 >

구분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미국	유럽연합
무효심판	○	○	○	○	○	○	○	○
취소심판	○	○	○	○	○	○	○	○

화장품업종 기업의 상표무단선점 대응 사례



▶ 브로커에 의한 상표무단선점 대응

1) 현황

삼푸, 향수, 바디워시 등 뷰티제품을 판매하는 지원기업 D사는 현재 약 40여 개국에 대상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해당 브랜드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지원기업은 중국 내 수출 확대 계획을 갖고, 상표 권리화를 모색하던 중 선행 조사과정에서 타인의 동일한 선등록상표를 확인함. 이에 선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화시키고, 지원기업의 상표권을 회수하여 상표 브로커의 모방 출원 또는 제 3자와의 상표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사업에 신청

2) 취소심판 청구 대응

중국 내 동일 및 유사상표를 검색한 결과, 무단 선등록 상표외에 분쟁가능성있는 선행상표가 확인됨. 확인 된 상표 중 2개의 상표는 상표선점자가 전문적으로 상표를 선점하는 브로커임을 확인하였고 상표의 사용 또한 확인 되지 않아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문제상표의 무효화 대응 진행 결정. 이에 취소심판 2건을 청구하여 승소



▶ 특수관계인에 의한 상표무단선점 침해 대응

1) 현황

2016년 설립된 화장품 기업 E사는 한국에서 생산하여 중국 및 홍콩에서 자사의 브랜드 제품을 판매중이며 해외 박람회에 다수 참여한 이력이 있음. 과거 중국 현지 판매권자에 의해 중국 내에서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된 사실을 알게 되어 무효심판 및 이의신청을 진행한 이력이 있음. 이 과정에서 호주에서도 사업관계가 종료된 호주 기업이 상표를 모방 출원 및 사칭하여 제품을 판매중인 사실을 알게 됨. 총 7건의 문제상표를 발견하였으며 해외에서의 상표권 침해 대응을 위해 K-브랜드분쟁 대응 전략 사업에 참여

2)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대응

호주에서의 무단선점 상표를 대상으로 무단선권리자의 영업현황 조사, 상표사용 사실 등을 검토해본 결과 상표 사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사용 취소심판 제기 후 1건에 대해 승소. 또한 문제상표 중 부정한 의도로 출원된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1건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사용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최종 승소함

화장품업종 기업의 상표무단선점 분쟁 판례



▶ 중국에서의 저명성을 인정받아 선등록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통한 권리회복

1) 상황

국내 화장품 업종 기업 F사는 자사의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중국 내 기업이 등록한 제3류 외에 다른 분류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 후 해당 유사상표 권리자를 대상으로 중국 내 소를 제기하고 저명상표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와 공개 사과 성명, 손해배상 50만(한화 약 9,431만원) 위안을 청구

2) 법원 판결

법원은 F사의 등록상표가 저명상표로 인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상표 권리자가 비록 다른 분류로 상표를 등록하였으나 저명상표는 중국 내 모든 산업에서 <상표법>의 보호를 받음을 판시. 이에, 유사상표 권리자에게 원심에서는 중국 내 유사상표 권리자의 상표 침해 행위 중지, 공개 사과 성명 게시, 손해배상액 배상을 판결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 기각을 판결

3) 시사점

중국의 '저명상표'란 일반적인 상표보다 저명한 상표를 더욱 보호하는 법적 장치임. 저명상표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 상표가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은 명성과 신용을 담고 있음이 공인되어 중국 내 모든 산업군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 또한 타인으로부터 선등록된 상표라고 해도 '저명상표'로 인정된다면 선등록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비록 '저명상표'로 인정된 우리 기업의 상표가 극소수이지만, 우리 기업이 보유한 브랜드가 중국 내에서 저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요청한다면, 상표를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상표 무단선점 대응 효과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 청구, 경고장 발송, 협상 등의 대응 전략을 통해 우리 상표를 확보한 결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안전한 발판을 마련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협업체)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

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주요 상표 보호 지원사업 안내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협업체)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 기업 대응방식은 개별대응과 공동대응으로 나뉘며 개별대응은 분쟁발생 여부에 따라 분쟁대응 또는 권리보호 유형 중에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 등 전세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중인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공합니다.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지원사업: 중국, 아세안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중인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유통현황 모니터링 및 기업 맞춤형 대응전략 교육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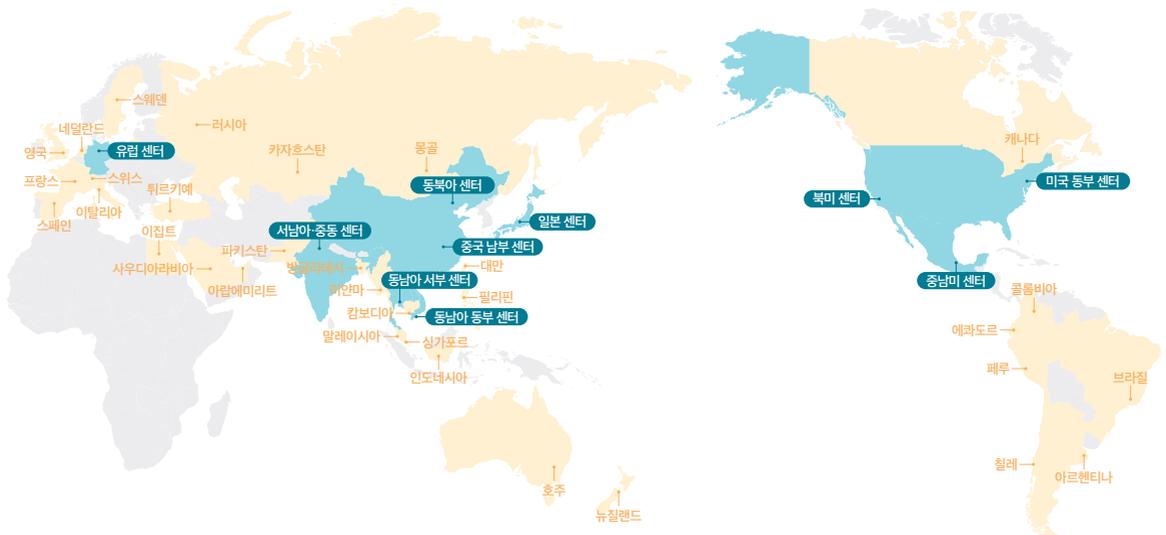
○ 해외 지식재산(IP)센터 운영

- 지재권 상담: 해외 지재권 출원 방법, 현지 진출에 따른 지재권 분쟁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개최되는 주요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에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여 참가 기업을 위한 현지 지재권 정보제공 및 현장에서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초동대응을 지원합니다.
- 해외 네트워크 구축: 수출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해외 현지 지재권 공무원 대상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한국 초청세미나와 같은 업무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수출(예정)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지재권 침해물품 유통 대응, 해외기업과의 초기 지재권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의견서 제공, 해외 기업과의 지재권 계약서 작성·검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세관 지재권 등록 비용을 제공합니다.



권역	소재지	이메일	서비스 제공국가(지역)
북미IP센터	로스앤젤레스	la_ipcenter@koipa.re.kr	미국 서부, 캐나다
미국동부IP센터	워싱턴D.C	washington_ipcenter@koipa.re.kr	미국 동부
동북아IP센터	베이징	beijing_ipcenter@koipa.re.kr	중국 북부, 몽골
중국남부IP센터	광저우	guangzhou_ipcenter@koipa.re.kr	중국 남부(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일본IP센터	도쿄	tokyo_ipcenter@koipa.re.kr	일본
유럽IP센터	프랑크푸르트	frankfurt_ipcenter@koipa.re.kr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스웨덴, 러시아
동남아동부IP센터	호치민	hochiminh_ipcenter@koipa.re.kr	베트남,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동남아서부IP센터	방콕	bangkok_ipcenter@koipa.re.kr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서남아-중동IP센터	뉴델리	newdelhi_ipcenter@koipa.re.kr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이집트
중남미IP센터	멕시코시티	mexicocity_ipcenter@koipa.re.kr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해외지식재산센터 지도



나. 지식재산권 정보 사이트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

일일분쟁속보,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NPE 활동 동향 분석, 해외 지재권 정보 제공 등 해외 수출기업 및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식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사이트입니다.



○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

해외진출(준비) 중소기업을 위해 분쟁 모니터링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 사업 소개까지 원스톱으로 한번에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K-브랜드 보호 포털

해외에서의 K-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및 해외 상표 무단선점 현황 및 대응 가이드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다. 해외 상표 검색 사이트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유럽지식재산권청(EUIPO)은 여러 국가의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한곳에 모아 글로벌 상표검색 서비스를 제공
-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확인을 위해서는 WIPO, EUIPO 사이트 검색 후, 상표 선점이 의심되는 국가의 상표검색 사이트 통해 상세한 검색 필요

국가	웹 링크
WIPO GBD	https://branddb.wipo.int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글로벌 상표검색 서비스 137개국의 5,270여만 건 이상의 상표 정보를 제공
EUIPO TMview	https://www.tmdn.org/tmview 유럽지식재산권청(EUIPO)이 무료로 제공하는 글로벌 상표검색 서비스
아세안 TMview	http://www.asean-tmview.org/tmview/welcome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의 상표 약 500만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국	http://wcjs.sbj.cnipa.gov.cn/txnT01.do
인도네시아	https://pdki-indonesia.dgip.go.id/
싱가포르	https://digitalhub.ipos.gov.sg/FAMN/eservice/IP4SG/MN_TmSimilarMarkSearch
태국	https://www.ipthailand.go.th/th/home.html
베트남	http://wipopublish.ipvietnam.gov.vn/wopublish-search/public/trademarks?2&query=**

라. 업무협약 체결 협회 사이트



- 대한화장품협회 <https://kcia.or.kr/home/main/>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s://www.kfia.or.kr/> 
- 한국패션산업협회 <http://www.koreafashion.org/>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http://www.ikfa.or.kr/>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http://www.k-mca.or.kr/> 

마. 기타 지식재산 보호 관련 기관

- 관세청(www.customs.go.kr) 

권리보호신고를 통해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신고 후 통관단계에서 적발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하고 있으며 통관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www.at.or.kr) 

수출 식품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재권 출원비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www.e-tipa.org) 

무역활동에 참여하는 공급자와 국내외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지식재산권자, 적절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에 유통시키는 회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외국에서 수입되는 위조상품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유통되는 K-브랜드 상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조폐공사 (www.komsco.com) 

위변조 제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안 기술을 민간 기업에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위변조방지 기술 개발로 브랜드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청



K-ipcar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업종 기업을 위한
**K-Beauty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 가이드**